



제 428회 국회(임시회)
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 K-콘텐츠공연복합구역의 지정 및 지원〉

■ 김미애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1304호)

2025. 8.
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천우정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3
1. K-콘텐츠공연복합구역의 지정 및 지원(안 제18조의2 신설)	3

I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김미애의원 등 15인

나. 발 의 일 : 2025. 7. 7.

다. 회 부 일 : 2025. 7. 8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K-콘텐츠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, K-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.

현재 문화 관련 법률에는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의 진흥의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, K-콘텐츠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개별 시설이나 사업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. K-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창작, 기술, 인력, 금융,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이 유기적으로 집적된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하여 공연·관광 등 연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K-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-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하고 통합기반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·유통·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-콘텐츠 산업의 글로벌

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211305호), 「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21130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Ⅲ. 검토의견

1. K-콘텐츠공연복합구역의 지정 및 지원(안 제18조의2 신설)

가. 개정안 요지

-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 콘텐츠의 공연·유통·수출 거점화를 위하여 공연장, 영상제작시설, 관광·전시 인프라 등이 연계된 복합시설에 민간 콘텐츠 기업이 일정 수 이상 입주하여 제작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, 해당 시설 또는 부지를 K-콘텐츠 공연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대해 한류공연 유치 전용시설 조성, 해외 홍보 및 수출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제18조의2 신설).

나.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18조의2(K-콘텐츠공연복합구역의 지정 및 지원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 콘텐츠의 공연·유통·수출 거점화를 위하여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31조의2에 따른 K-컬처 복합거점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

춘 시설 또는 부지를 K-콘텐츠 공연복합구역(이하 “K-콘텐츠공연복합구역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공연장 · 영상제작시설 · 관광 · 전시 인프라가 연계된 복합시설이 위치할 것

2. 민간 콘텐츠 기업이 일정 수 이상 입주하여 제작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
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K-콘텐츠공연복합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1. K-팝 · 드라마 · 웹툰 등 한류공연 유치를 위한 전용 시설 조성 지원

2. 공연장과 연계된 쇼핑 · 체험 · 미디어융합 공간의 개발비 지원

3.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및 수출지원 플랫폼 구축 지원

③ 그 밖에 K-콘텐츠공연복합

	<u>구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--	--

다. 검토사항

- 최근 K-콘텐츠 산업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출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으며, 특히 K-팝, 드라마,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 장르가 공연·관광 등 연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.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지역 기반의 콘텐츠 창작·공연·유통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.
-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고유의 문화 진흥과 향유 확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고, 콘텐츠산업과 공연·체험·수출 등 문화산업과의 연계에 대한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. 특히 지역 내 민간 콘텐츠 기업의 창작활동과 연계된 공간 기반 조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.
-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장, 영상제작시설, 관광·전시 인프라 등이 연계된 복합시설 중 민간 콘텐츠 기업이 입주한 시설 또는 부지를 K-콘텐츠공연복합구역으로 지정하고, 해당 구역에 한류공연 유치를 위한 전용 시설 조성, 해외 수출 플

랫폼 구축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- 이는 지역 내 공연·창작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콘텐츠 창작자와 민간기업의 집적·연계 효과를 창출하고, 지역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글로벌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유통·수출 경로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, 문화 향유권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.
- 다만, 안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K-콘텐츠공연복합구역에 대한 지원사항 중 ‘한류공연 유치를 위한 전용 시설 조성 지원’은 K-팝 등 대중문화 콘텐츠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, 한류공연의 범주에 드라마, 웹툰 등과 같은 비공연 장르까지 포괄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.
- 동 개정안에 대해 **문화체육관광부**는 개정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‘K-콘텐츠 공연복합구역’이 공연·관광 등 K-콘텐츠 연관 산업이 집적된 복합구역 조성을 통해 K-콘텐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,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.
 - 개정안에 ‘K-콘텐츠’ 및 ‘K-콘텐츠 공연복합구역’의 정의 규정이 부재하며, ‘K-콘텐츠’의 경우 특정 장르나 형식 등을 기

준으로 개념을 한정적으로 정의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적용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음.

- 현행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2조제7호의 문화지구 제도하에서도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개정안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.

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2조 제7호	“문화지구”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,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- 아울러, 동 개정안은 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211305호)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, ‘K-콘텐츠 공연복합구역’은 해당 개정안의 ‘K-컬처 복합거점지구’와 목적과 지정 요건이 유사하여 중복 여지가 있다는 점 또한 고려가 필요함.

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개정안」 제31조의2 제1항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 /의안번호 2211305호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,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기업 집중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K-컬처 복합거점지구(이하 “K-컬처거점지구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 1. 콘텐츠 창작 및 제작 활동이 활발하고 관련 인프라 조성이 용이할 것 2. 지역 대학, 기업 등과의 연계 협력이 가능할 것 3. 해외 진출을 위한 거점화 가능성이 높을 것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
--	--

	K-콘텐츠 공연복합구역(개정안)	문화지구
근거법령	-	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8조
목적	지역문화 콘텐츠의 공연·유통·수출 거점화	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,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등
지정요건	1. 공연장·영상제작시설·관광·전시 인프라가 연계된 복합시설이 위치할 것 2. 민간 콘텐츠 기업이 일정 수 이상 입주하여 제작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	1.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·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.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·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. 그 밖에 유형·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
지정권자	문화부 장관	시·도지사, 대도시 시장 (인구 50만 이상)
지정혜택	<우선 지원 사항> 1. K-팝·드라마·웹툰 등 한류공연 유치를 위한 전용 시설 조성 지원 2. 공연장과 연계된 쇼핑·체험·미디어융합 공간의 개발비 지원 3.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및 수출지원 플랫폼 구축 지원	<특정시설 영업금지> · 사행행위영업장, 단란주점, 유흥주점 등 <권장시설에 대한 행·재정지원> · 지자체별 조례로 정함(아래) - (재정지원) 조세 감면 등 - (행정지원) 권장업소 용자지원, 홍보, 차없는 거리 행사, 경관개선·이정표 제작, 문화프로그램 지원 등
지정 수	-	7개

○ 한편, 농림축산식품부는 K-콘텐츠공연복합구역 조성이 「한식진흥법」에 따른 K-미식벨트 및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 등 농식품부 사업과 중복·상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¹⁾, 「전통문화산업 진

1) 「한식진흥법」 제9조(한식의 확산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제14조(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홍법」과 같이 관계 부처 협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²⁾.

- 참고로, 동 개정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211305호), 「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21130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.

법률안명 (의안번호)	제안자	주요 내용	발의일자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2211305)	김미애의원 등 14인	K-컬처 복합거점지구의 지정 및 지원	2025. 7. 7.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2211303)	김미애의원 등 15인	K-콘텐츠 통합기반시설의 지정 등	2025. 7. 7.

문 의 처

02)6788-5384

1. 한식과 관련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
2. 한식사업자의 경영, 서비스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
3. 지역별 한식과 연계된 한식관광 상품의 개발,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지원
4. 그 밖에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

- 2) 「전통문화산업 진흥법」 제5조(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